# 대기오염방지법

국 가 일본

원 법 률 명 大気汚染防止法

제 정 1968.06.10 法律 第97号

개 정 2017.06.02 法律 第45号

수 록 자 료 대기오염방지법(大気汚染防止法), pp.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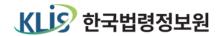
발 행사항 세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이 번역문은 외국 법률의 해석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http://www.nanet.go.kr





# 「대기오염방지법」 (제1조-제5조)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 원문 번역문

#### 第一章 総則

# 第一条(目的)

この法律は、工場及び事業場における事業活動並びに建築物等の解体等に伴うばい煙、揮発性有機化合物及び粉じんの排出等を規制し、水銀に関する水俣を約(以下「条約」という。)する実施を確保する。)する事業場に伴う水銀等の排出を確ける事業活動に伴う水銀等の排出をあため工場及び事業場における事業場に伴う水銀等の排出をかりまた。並びに自動車排出がスに係る許容限度を定める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장 및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 건축물 등의 해체 시 발생하는 매연, 휘발성유기화합 물 및 분진의 배출 등을 규제하 고,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조약 (이하 "조약"이라 한다)의 정확 하고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 장 및 사업장에서의 사업활동 시 발생하는 수은 등의 배출을 규제하고, 유해대기오염물질대 책의 실시 추진과 자동차배출가 스에 관한 허용한도를 규정하는





こと等により、大気の汚染に関し、国民の健康を保護するとともに生活環境を保全し、並びに大気の汚染に関して人の健康に 大気の汚染に関して人の健康に 係る被害が生じた場合における 事業者の損害賠償の責任につい て定めることにより、被害者の 保護を図ることを目的とする。

## 第二条 (定義等)

この法律において「ばい煙」とは、次の各号に掲げる物質をいう。

- 一 燃料その他の物の燃焼に伴 い発生するいおう酸化物
- 二 燃料その他の物の燃焼又は 熱源としての電気の使用に伴 い発生するばいじん
- 三 物の燃焼、合成、分解その他の処理(機械的処理を除く。)に伴い発生する物質のうち、カドミウム、塩素、弗ふつ化水素、鉛その他の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物質(第一号に掲げるものを除く。)で政令で定めるもの

2 この法律において「ばい煙発 生施設」とは、工場又は事業場 등 대기오염에 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과 아울러 생활환 경을 보전하고 대기오염에 관하 여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사업자의 손해배 상책임에 대하여 정함으로써 피 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등)

- ① 이 법에서 "매연"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 1. 연료, 그 밖의 물질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황 산화물 2. 연료, 그 밖의 물질의 연소 또는 열원으로서 전기 사용 시에 발생하는 매연
  - 3. 물질의 연소, 합성, 분해, 그 밖의 처리(기계적 처리를 제외한다) 시에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염소, 불화수소, 아연, 그 밖의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 ② 이 법에서 "매연발생시설"이 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





に設置される施設でばい煙を発生し、及び排出するもののうち、その施設から排出されるばいた気の汚染の原因となるものをいうので定めるものをいう。 2 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理施設」とは、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ばい煙を処理はいて発生するばい煙を処理する施設をいう。

4 この法律において「揮発性有 機化合物」とは、大気中に排出 され、又は飛散した時に気体で ある有機化合物(浮遊粒子状物 質及びオキシダントの生成の原 因とならない物質として政令で 定める物質を除く。)をいう。 5 この法律において「揮発性有 機化合物排出施設」とは、工場 又は事業場に設置される施設で 揮発性有機化合物を排出するも ののうち、その施設から排出さ れる揮発性有機化合物が大気の 汚染の原因となるものであつて 、揮発性有機化合物の排出量が 多いためにその規制を行うこと が特に必要なものとして政令で 定めるものをいう。

6 前項の政令は、事業者が自主的に行う揮発性有機化合物の排

는 시설로서 매연을 발생하고 배출하는 것 중 그 시설에서 배 출되는 매연이 대기오염의 원인 이 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 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이 법에서 "매연처리시설"이란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및이에 부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④ 이 법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흩날릴 때에 기체인 유기화합물(부유입자상물질 및 산화체생성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⑤ 이 법에서 "휘발성유기화합 물배출시설"이란 공장 또는 사 업장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휘발 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것 중 그 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휘발성유기화합 물의 배출량이 많아 규제가 특 히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⑥ 제5항의 정령은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휘발성유





出及び飛散の抑制のための取組 が促進されるよう十分配慮して 定めるものとする。

7 この法律において「粉じん」とは、物の破砕、選別その他の機械的処理又は堆積に伴い発生し、又は飛散する物質をいう。8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粉じん」とは、粉じんの健康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物質で政治をいう。場に続いるとは、特定粉じん以外の粉じんをいう。

9 この法律において「一般粉じん発生施設」とは、工場又は事業場に設置される施設で一般粉じんを発生し、及び排出し、又は飛散させるもののうち、その施設から排出され、又は飛散する一般粉じんが大気の汚染の原因とな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10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粉 じん発生施設」とは、工場又は 事業場に設置される施設で特定 粉じんを発生し、及び排出し、 又は飛散させるもののうち、そ の施設から排出され、又は飛散 する特定粉じんが大気の汚染の 기화합물의 배출 및 비산의 억 제를 위한 대처가 촉진되도록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⑦ 이 법에서 "분진"이란 물질 의 파쇄, 선별, 그 밖의 기계적 처리 또는 퇴적 시에 발생하거 나 흩날리는 물질을 말한다.

⑧ 이 법에서 "특정분진"이란 분진 중 석면, 그 밖의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분진" 이란 특정분진 외의 분진을 말 하다.

⑨ 이 법에서 "일반분진발생시설"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일반분진을 발생 및 배출하거나 흩날리게 하는 것 중 그 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흩날리는 일반분진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⑩ 이 법에서 "특정분진발생시설"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로서 특정분진을 발생 및 배출하거나 흩날리게 하는 것 중 그 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흩날리는 특정분진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





原因とな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11 この法律において「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とは、吹付け石綿その他の特定粉じんを発生し、又は飛散させる原因となる建築材料で政令で定めるもの

(以下「特定建築材料」という。)が使用されている建築物その他の工作物(以下「建築物等」という。)を解体し、改造し、又は補修する作業のうち、その作業の場所から排出され、又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が大気の汚染の原因となるもの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12 この法律において「水銀等」とは、水銀及びその化合物をいう。

13 この法律において「水銀排出施設」とは、工場又は事業場に設置される施設で水銀等を大気中に排出するもののうち、条約の規定に基づきその規制を行うことが必要な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14 この法律において「排出 口」とは、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ばい煙、揮発性有 機化合物排出施設に係る揮発性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이란 분무된 석면, 그 밖의 특정분진을 발생 또는 흩날리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건축재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특정건축재료"라 한다)이사용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해체·개조 또는 보수하는 작업중 그 작업 장소에서 배출되거나 흩날리는 특정분진이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이 법에서 "수은 등"이란 수 은 및 그 화합물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수은배출시설"이 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 는 시설로서 수은 등을 대기 중 으로 배출하는 것 중 조약에 따 라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서 정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④ 이 법에서 "배출구"란 매연 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에 관 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또는 수은





有機化合物又は水銀排出施設に 係る水銀等を大気中に排出する ために設けられた煙突その他の 施設の開口部をいう。

15 この法律において「有害大 気汚染物質」とは、継続的に摂 取される場合には人の健康を損 なうおそれがある物質で大気の 汚染の原因となるもの(ばい煙 (第一項第一号及び第三号に掲 げるものに限る。)、特定粉じ ん及び水銀等を除く。)をいう

16 この法律において「自動車排出ガス」とは、自動車(道路運送車両法(昭和二十六年法律第百八十五号)第二条第二項に規定する自動車のうち環境省令で定めるもの及び同条第三項もで定めるものをが見たがあるをで定めるものをした。)の運行に水素、環境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ものをで変わるものをで変わるものをで変かるものをで変かるものをで変かるものをで変かるもので変かるものが質で政令で定めるものをいう。

배출시설에 관한 수은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굴뚝, 그 밖의 시설의 개구부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유해대기오염물 질"이란 계속적으로 섭취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 는 물질로서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매연(제1항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 특정분진 및 수은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 다.

(⑥ 이 법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란 자동차[「도로운송차량법」 (소화26<1981>년 법률 제185호)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중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중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아연, 그 밖의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第二章 ばい煙の排出の規制等

#### 第三条 (排出基準)

ばい煙に係る排出基準は、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ばい煙について、環境省令で定める。

- 2 前項の排出基準は、前条第一 項第一号のいおう酸化物(以下 単に「いおう酸化物」という
- 。)にあつては第一号、同項第二号のばいじん(以下単に「ばいじん」という。)にあつては第二号、同項第三号に規定する物質(以下「有害物質」という。)にあつては第三号又は第四号に掲げる許容限度とする。

一 いおう酸化物に係るばい煙

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いおう酸化物の量について、政令で定める地域の区分ごとに排出口の高さ(環境省令で定める方法により補正を加えたものをいう。以下同じ。)に応じて定める許容限度二ばいじん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排出

物に含まれるばいじんの量に

#### 제2장 매연의 배출 규제 등

#### 제3조 (배출기준)

- ① 매연에 관한 배출기준은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에 대하여 환경성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배출기준은 제1조 제1항제1호의 유황산화물(이하 "유황산화물"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제1호, 같은 항 제2호의 매진(煤塵)(이하 "매진"이라 한 다)의 경우에는 제2호,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물질(이하 "유해 물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 3호 또는 제4호의 허용한도로 한다.
  - 1. 유황산화물에 관한 매연발 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 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황산화물의 양에 대하여 정 령으로 정하는 지역 구분마다 배출구의 높이(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보완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 한 허용한도
  - 2. 매진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포함되는 매진의 양에 대하여





ついて、施設の種類及び規模 ごとに定める許容限度

三 有害物質(次号の特定有害 物質を除く。) に係るばい煙 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排 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 排出物に含まれる有害物質の 量について、有害物質の種類 及び施設の種類ごとに定める 許容限度

四 燃料その他の物の燃焼に伴 い発生する有害物質で環境大 臣が定めるもの(以下「特定 有害物質」という。) に係る 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 し、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 される特定有害物質の量につ いて、特定有害物質の種類ご とに排出口の高さに応じて定 める許容限度

3 環境大臣は、施設集合地域 (いおう酸化物、ばいじん又は 特定有害物質に係るばい煙発生 施設が集合して設置されている 地域をいう。) の全部又は一部 の区域における当該ばい煙発生 施設において発生し、大気中に 排出されるこれらの物質により 政令で定める限度をこえる大気 の汚染が生じ、又は生ずるおそ

시설의 종류 및 규모마다 정 한 허용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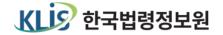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3. 유해물질(제4호의 특정유 해물질을 제외한다)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 되는 배출물에 포함되는 유해 물질의 양에 대하여 유해물질 의 종류 및 시설의 종류마다 정한 허용한도

4. 연료, 그 밖의 연소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로서 환경 대신이 정하는 것(이하 "특정 유해물질"이라 한다)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 되는 특정유해물질의 양에 대 하여 특정유해물질의 종류마 다 배출구의 높이에 따라 정 한 허용한도

③ 환경대신은 시설집합지역(유 황산화물, 매진 또는 특정유해 물질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이 집 합적으로 설치된 지역을 말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에서 해당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 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 물 질들이 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기오염을 발생시키

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고 인





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環境 省令で、当該全部又は一部の区域を限り、その区域に新たに設 置される当該ばい煙発生施設に ついて、第一項の排出基準(次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排出基準 が定められた場合にあつては、 その排出基準)にかえて適用す べき特別の排出基準を定めるこ とができる。

- 4 第二項(同項第三号を除く 。)の規定は、前項の排出基準 について準用する。
- 5 環境大臣は、第一項の規定によりいおう酸化物に係る排出基準を定め、又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排出基準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関係都道府県知事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又は廃止しようと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 第四条

都道府県は、当該都道府県の区域のうちに、その自然的、社会的条件から判断して、ばいじん又は有害物質に係る前条第一項又は第三項の排出基準によつては、人の健康を保護し、又は生活環境を保全することが十分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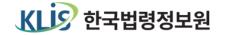
정할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정하여 그 구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매연발생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배출기준(제4조제1항에 따라배출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배출기준)을 대신하여 적용할특별한 배출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같은 항 제3호를 제 외한다)은 제3항의 배출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⑤ 환경대신은 제1항에 따라 유황산화물에 관한 배출기준을 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배출기 준을 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때에도 같다.

#### 제4조

① 도도부현은 그 구역 중에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판단하여 매진 또는 유해물질에 관한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배출기 준으로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거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구





ないと認められる区域があると きは、その区域におけるばい煙 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これ らの物質について、政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条例で、同条 第一項の排出基準にかえて適用 すべき同項の排出基準で定める 許容限度よりきびしい許容限度 を定める排出基準を定めること ができる。

- 2 前項の条例においては、あわせて当該区域の範囲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都道府県が第一項の規定により排出基準を定める場合には、 当該都道府県知事は、あらかじめ、環境大臣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五条** (排出基準に関する勧告)

環境大臣は、大気の汚染の防止のため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に対し、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り排出基準を定め、又は同項の規定により定められた排出基準を変更すべきると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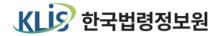
역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의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이 물질에 대하여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서 같은 조 제 1항의 배출기준을 대신하여 적용할 같은 항의 배출기준으로 정한 허용한도보다 엄격한 허용한도를 정하는 배출기준을 정할수 있다.

- ② 제3조의 조례는 아울러 해당 구역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 ③ 도도부현이 제1항에 따라 배출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도도부현 지사는 사전에 환 경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 (배출기준에 관한 권고)

환경대신은 대기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에 제4조제1항 에 따라 배출기준을 정하거나 정해진 배출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5 조의 2-제 9 조의 2)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 원문 번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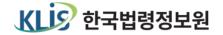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 第五条の二 (総量規制基準)

## 제5조의2 (총량규제기준)

① 도도부현 지사는 공장 또는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에서 제3 조제1항이나 제3항 또는 제4조 제1항의 배출기준만으로는

「환경기본법」(평성 5<1993>년 법률 제91호) 제 16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에 관한 환경상의 조건에 대한 기 준(제5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기환경기준"이라 한다)을 확 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 으로서 유황산화물, 그 밖의 정 령으로 정하는 매연(이하 "지정





2 都道府県知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指定地域を二以上の区域に区分し、それらの区域ごとに前項の総量規制 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3 都道府県知事は、新たにばい 煙発生施設が設置された特定工 場等(工場又は事業場で、ばい 煙発生施設の設置又は構造等と 変更により新たに特定工場等と なつを含む。)及びこれた特定工場等に に設置された特定工場等につい で、第一項の指定ばい煙総量で て、第一項の指定ばい煙総で で、第一項の指定ばい煙に があるところにより、それぞれ同 項の総量規制基準に代えて適用 매연"이라 한다)마다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 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지정 지역에서 지정매연을 배출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서 환경성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 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것(이하 "특정공장 등"이 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지정매 연에 대하여 지정매연총량삭감 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량규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②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지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그 구역마다 제1항의 총량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도도부현 지사는 새로이 매연발생시설이 설치된 특정공장 등(공장 또는 사업장으로서 매연발생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등의 변경으로 새로이 특정공장등이 된 것을 포함한다) 및 새로이 설치된 특정공장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정매연총량삭 감계획을 기초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총량규제기준을 대신하여 적





すべき特別の総量規制基準を定 めることができる。

4 第一項又は前項の総量規制基準は、特定工場等につき当該特定工場等に設置されているすべての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当該指定ばい煙の合計量について定める許容限度とする

5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の政 令で定める地域の要件に該当す ると認められる一定の地域があ るときは、同項の地域を定める 政令の立案について、環境大臣 に対し、その旨の申出をするこ とが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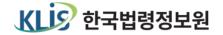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6 環境大臣は、第一項の地域を 定める政令の制定又は改廃の立 案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関係 都道府県知事の意見を聴かなけ ればならない。

7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又は 第三項の総量規制基準を定める ときは、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 い。これを変更し、又は廃止す るときも、同様とする。 용할 특별총량규제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총량규 제기준은 특정공장 등에 대하여 그 공장 등에 설치된 모든 매연 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 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지 정매연의 합계량에 대하여 정하 는 허용한도로 한다.

-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지 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지 역을 정하는 정령의 입안에 대 하여 환경대신에게 그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환경대신은 제1항의 지역을 정하는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 의 입안을 하려는 때에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⑦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총량규제기준을 정할 때에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할 때에도 같다.





# 第五条の三 (指定ばい煙総量削減計画)

前条第一項の指定ばい煙総量削 滅計画は、当該指定地域につい て、第一号に掲げる総量を第三 号に掲げる総量までに削減させ ることを目途として、第一号に 掲げる総量に占める第二号に掲 げる総量の割合、工場又は事業 場の規模、工場又は事業場にお ける使用原料又は燃料の見通し 、特定工場等以外の指定ばい煙 の発生源における指定ばい煙の 排出状況の推移等を勘案し、政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四 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を定めるものとする。この場合 において、当該指定地域におけ る大気の汚染及び工場又は事業 場の分布の状況により計画の達 成上当該指定地域を二以上の区 域に区分する必要があるときは 、第一号から第三号までに掲げ る総量は、区分される区域ごと のそれぞれの当該指定ばい煙の 総量とする。

一 当該指定地域における事業 活動その他の人の活動に伴つ て発生し、大気中に排出され る当該指定ばい煙の総量

# **제5조의3** (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

① 제5조의2제1항의 지정매연 총량삭감계획은 해당 지정지역 에 대하여 제1호의 총량을 제3 호의 총량까지 삭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1호의 총량을 차지하 는 제2호의 총량의 비율, 공장 또는 사업장의 규모, 공장 또는 사업장의 사용원료 또는 연료의 예측, 특정공장 등 외의 지정매 연 발생원의 지정매연 배출 상 황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정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정한 다. 이 경우에 해당 지정지역의 대기오염 및 공장 또는 사업장 의 분포 상황에 따라 계획을 달 성하는 데에 해당 지정지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총량은 구분되는 구역별 각각의 지정매연의 총량 으로 한다.

해당 지정지역의 사업활동,
 나의 사람의 활동 시 발생
 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해당 총량





- 二 当該指定地域におけるすべての特定工場等に設置されている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当該指定ばい煙の総量
- 三 当該指定地域における事業 活動その他の人の活動に伴つ て発生し、大気中に排出され る当該指定ばい煙について、 大気環境基準に照らし環境省 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算定 される総量

四 第二号の総量についての削減目標量(中間目標としての削減目標量を定める場合にあっては、その削減目標量を含む。)

五 計画の達成の期間 六 計画の達成の方途

- 2 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一項 の指定ばい煙総量削減計画を定 めようとするときは、環境基本 法第四十三条の規定により置か れる審議会その他の合議制の機 関及び関係市町村長の意見を聴 かなければならない。
- 3 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一項の指定ばい煙総量削減計画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

- 2. 해당 지정지역의 모든 특 정공장 등에 설치된 매연발생 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에 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해 당 지정매연의 총량
- 3. 해당 지정지역의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 시 발생 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해당 지정매연에 대하여 대기 환경기준에 비추어 환경성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되는 총량
- 4. 제2호의 총량에 대한 삭감 목표량(중간목표로서의 삭감 목표량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삭감목표량을 포함한다)
- 5. 계획달성기간
- 6. 계획달성방법
-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의2 제1항의 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 을 정하려는 때에는 「환경기본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되는 심의회, 그 밖의 합의제 기관 및 관계 시정촌장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의2 제1항의 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 을 정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제





- め、第一項第四号及び第五号に 係る部分について、環境大臣に 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一項 の指定ばい煙総量削減計画を定 めたときは、第一項各号に掲げ る事項を公表するよう努めなけ ればならない。
- 5 都道府県知事は、当該指定地域における大気の汚染の状況の変動等により必要が生じたときは、前条第一項の指定ばい煙総量削減計画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 6 第二項から第四項までの規定 は、前項の規定による計画の変 更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六条 (ばい煙発生施設の設置の届出)

ばい煙を大気中に排出する者は、ばい煙発生施設を設置しよう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

- 1항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환경대신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도도부현 지사는 제5조의2 제1항의 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 을 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도도부현 지사는 해당 지정 지역의 대기오염 상황의 변동 등에 따라 필요하게 된 때에는 제5조의2제1항의 지정매연총량 삭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제5 항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대하 여 준용한다.

제6조 (매연발생시설의 설치 신 고)

- ① 매연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는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 所在地

- 三 ばい煙発生施設の種類
- 四 ばい煙発生施設の構造
- 五 ばい煙発生施設の使用の方法

六 ばい煙の処理の方法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 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 、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 ま物質の量(以下「ばい煙量」 という。)又はばい煙発生施設 気中に排出される排出物に含ま 気中に排出される排出物に含まれるばいじん若しくは有害物質 (以下「ばい煙濃度」という 。)及びばい煙の排出の方法そ

の他の環境省令で定める事項を

記載した書類を添附しなければ

# 第七条(経過措置)

ならない。

一の施設がばい煙発生施設となった際現にその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設置の工事をしている者を含む。)であつてばい煙を大気中に排出するものは、当該施設がばい煙発生施設となった日から三十日以内に、環境省令

#### 및 소재지

- 3. 매연발생시설의 종류
- 4. 매연발생시설의 구조
- 5. 매연발생시설의 사용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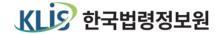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 6. 매연 처리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 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유황산화물이나 특정유해물질의 양(이하 "매연량"이라 한다) 또는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고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포함되는 매진이나유해물질(특정유해물질을 제외한다)의 양(이하 "매연농도"라한다)의 양(이하 "매연농도"라한다) 및 매연의 배출 방법, 그밖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 제7조 (경과조치)

① 하나의 시설이 매연발생시설이 된 때 실제로 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 공사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매연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매연발생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성령으로 정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 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都道府 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八条 (ばい煙発生施設の構造等 の変更の届出)

第六条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 の届出に係る第六条第一項第四 号から第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 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 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その旨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 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六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第九条 (計画変更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第六条第一項 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の 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に係 るばい煙量又はばい煙濃度がそ のばい煙発生施設に係る排出基 準(第三条第一項の排出基準

(同条第三項又は第四条第一項

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8조 (매연발생시설의 구조 등 의 변경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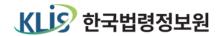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에 관한 제6조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 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도도 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9조 (계획변경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에 관련된 매연량 또는 매연농도가 그 매연발생시 설에 관한 배출기준[제3조제1 항의 배출기준(같은 조 3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배출





の規定により排出基準が定めら れた場合にあつては、その排出 基準を含む。) をいう。以下こ の章において「排出基準」とい う。)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 きは、その届出を受理した日か ら六十日以内に限り、その届出 をした者に対し、その届出に係 るばい煙発生施設の構造若しく は使用の方法若しくはばい煙の 処理の方法に関する計画の変更 (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 に係る計画の廃止を含む。)又 は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 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の設置 に関する計画の廃止を命ずるこ とができる。

# 第九条の二

기준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배출기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배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 부터 60일 이내로 한정하여 신 고한 자에게 신고에 관한 매연 발생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매연 처리 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포함한 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의 설 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명령 할 수 있다.

# 제9조의2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공장 등(공장 또는 사업장으로 서 해당 매연발생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등의 변경에 따라 새 로이 특정공장 등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에 대하여 해당 특정공장 등 에 설치되는 모든 매연발생시설





発生施設に係る当該指定ばい煙の合計量が総量規制基準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六十日以内に限り、当該特定工場等の設置者に対し、当該特定工場等における指定ばい煙の処理の方法の改善、使用燃料の変更その他必要な措置を採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第九条の二

都道府県知事は、第六条第一項 又は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て、そ 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が 設置される特定工場等(工場又 は事業場で、当該ばい煙発生施 設の設置又は構造等の変更によ り新たに特定工場等となるもの を含む。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 じ。) について、当該特定工場 等に設置されるすべてのばい煙 発生施設に係る当該指定ばい煙 の合計量が総量規制基準に適合 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届 出を受理した日から六十日以内 に限り、当該特定工場等の設置 者に対し、当該特定工場等にお ける指定ばい煙の処理の方法の

에 관한 해당 지정매연의 총량 이 총량규제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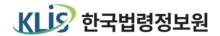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로 한정하여 해당 특정공장 등 의 설치자에게 해당 특정공장 등의 지정매연 처리 방법의 개 선, 사용연료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 제9조의2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 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에 관한 매연발생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공장 등(공장 또는 사업장으로 서 해당 매연발생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등의 변경에 따라 새 로이 특정공장 등이 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에 대하여 해당 특정공장 등 에 설치되는 모든 매연발생시설 에 관한 해당 지정매연의 총량 이 총량규제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 고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로 한정하여 해당 특정공장 등 의 설치자에게 해당 특정공장 등의 지정매연 처리 방법의 개







改善、使用燃料の変更その他必 要な措置を採るべきことを命ず ることができる。 선, 사용연료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10 조-제 18 조의 20)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광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원문	번역문
第十条 (実施の制限) 第六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又は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が受理された日から六十日を経過した後でなければ、それぞれ、そ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を設置し、又はそ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の構造若しくは使用の方法で変更をしてはた。	제10조 (실시의 제한)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이경과한 후에만 각각의 신고와관련된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매연발생시설의 구조,사용 방법이나 매연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ならない。 2 都道府県知事は、第六条第一 項又は第八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届出に係る事項の内容が相当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6조제1 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 고와 관련된 사항의 내용이 적





であると認めるときは、前項に 規定する期間を短縮することが できる。

# 第十一条 (氏名の変更等の届出)

第六条第一項又は第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 その届出に係る第六条第一項第 一号若しくは第二号に掲げる事 項に変更があつたとき、又はる 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の 使用を廃止したときは、その日 から三十日以内に、その旨を都 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 らない。

#### 第十二条 (承継)

第六条第一項又は第七条第一項 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から そ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 を譲り受け、又は借り受けた者 は、当該ばい煙発生施設に係る 当該届出をした者の地位を承継 する。

2 第六条第一項又は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相続、合併又は分割(その届出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を

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에 따른 기간을 단축할 수 있 다.

# 제11조 (성명의 변경 등의 신고)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제6조제1항제1호나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 또는 그신고와 관련된 매연발생시설의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뜻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승계)

-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그신고와 관련된 매연발생시설을 양수 또는 임차한 자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제6조제1항 또는 제7조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대하 여 상속, 합병 또는 분할(그 신 고와 관련된 매연발생시설을





承継させるものに限る。)があったときは、相続人、合併後存続する法人若しくは合併により設立した法人又は分割により当該ばい煙発生施設を承継した法人は、当該届出をした者の地位を承継する。

3 前二項の規定により第六条第 一項又は第七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届出をした者の地位を承継 した者は、その承継があつた日 から三十日以内に、その旨を都 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 らない。

4 工場又は事業場に設置される すべてのばい煙発生施設につい て、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 より届出をした者の地位を承継 した者は、第九条の二、第十四 条第三項又は第十五条の二第一 項若しくは第二項の規定の適用 については、工場又は事業場の 設置者の地位を承継するものと する。

第十三条(ばい煙の排出の制限) 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 るばい煙を大気中に排出する者 (以下「ばい煙排出者」とい 계시키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한 법인 또는 분할에 따라 해당 매연발생시설을 승계한 법 인은 그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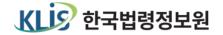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6 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 른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뜻을 도도부현 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2,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매연발생시설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제13조 매연배출제한)

①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매연배출자"라 한다)





う。)は、そのばい煙量又はばい煙濃度が当該ばい煙発生施設の排出口において排出基準に適合しないばい煙を排出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一の施設がば い煙発生施設となつた際現にそ の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設置 の工事をしている者を含む。) の当該施設において発生し、大 気中に排出されるばい煙につい ては、当該施設がばい煙発生施 設となった日から六月間(当該 施設が政令で定める施設である 場合にあつては、一年間)は、 適用しない。ただし、その者に 適用されている地方公共団体の 条例の規定で同項の規定に相当 するものがあるとき(当該規定 の違反行為に対する処罰規定が ないときを除く。)は、この限 りでない。

第十三条の二 (指定ばい煙の排 出の制限)

特定工場等に設置されている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 指定ばい煙に係るばい煙排出者 は、当該特定工場等に設置され 는 해당 시설의 배출구로 매연 량 또는 매연농도가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매연을 배출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하나의 시설이 매 연발생시설이 된 때에 실제로 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 공사 를 한 자를 포함한다)의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매연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매연발생시설이 된 날부 터 6개월간(해당 시설이 정령 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1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그 자에게 적용되는 지방공 공단체의 조례로서 제1항에 해 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해당 규 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 정이 없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 (지정매연의 배출제한)

① 특정공장 등에 설치된 매연 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매 연과 관련된 매연배출자는 해당 특정공장 등에 설치된 모든 매





ているすべてのばい煙発生施設 の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 る当該指定ばい煙の合計量が総 量規制基準に適合しない指定ば い煙を排出してはならない。

2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二項 の政令の改正、第五条の二第一 項の地域を定める政令の改正又 は同項の都道府県知事が定める 規模の変更により新たに特定工 場等となった工場又は事業場に 設置されているばい煙発生施設 において発生する指定ばに煙に 係るばい煙排出者については、 当該工場又は事業場が特定工場 等となった日から六月間は、 題 用しない。

## 第十四条(改善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ばい煙排出者が、そのばい煙量又はばい煙濃度が排出口において排出基準に適合しないばい煙を継続して排出す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当該ばい煙発生施設の構造若しくは使用の方法若しくは使用の方法の改善を命じ、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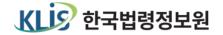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연발생시설의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지정매연의 합 계량이 총량규제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지정매연을 배출해서 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은 제2조제2항의 정령의 개정, 제5조의2제1항의 지역을 정하는 정령의 개정 또는 같은 항의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특정공장 등이 된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지정매연과 관련된 매연배출자에 대하여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이 특정공장 등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조 (개선명령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매연배출자가 배출구로 매연량 또는 매연 농도가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매연을 계속해서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매연발생시설의 구조나 사용방법, 해당 시설과 관련된 매연처리 방법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は当該ばい煙発生施設の使用の 一時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 る。

- 2 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
- 3 都道府県知事は、総量規制基準に適合しない指定ばい煙が継続して排出され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指定者に煙に係る特定工場等の設置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当該特定工場等における指定ばい煙の変更をおける措置を採るべき更その他必要な措置を採るべきる。
- 4 前項の規定は、第二条第二項 の政令の改正、第五条の二第一 項の地域を定める政令の改正又 は同項の都道府県知事が定める 規模の変更により新たに特定工 場等となつた工場又は事業場に ついては、当該工場又は事業場 が特定工場等となつた日から六 月間は、適用しない。

해당 시설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② 제1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도도부현 지사는 총량규제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지정매연 이 계속하여 배출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 매연과 관련된 특정공장 등의 설치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특정공장 등의 지정매연 처리방 법의 개선, 사용연료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④ 제3항은 제2호제2항의 정령의 개정, 제5조의2제1항의 지역을 정하는 정령의 개정 또는 같은 항의 도도부현 지사가 정하는 규모의 변경에 따라 새로이 특정공장 등이 된 공장 또는 사업장이 특정공장 등이 된 날부터 6개월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十五条 (季節による燃料の使用 に関する措置)

都道府県知事は、いおう酸化物 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で季節に より燃料の使用量に著しい変動 があるものが密集して設置され ている地域として政令で定める 地域に係るいおう酸化物による 著しい大気の汚染が生じ、又は 生ずるおそれがある場合におい て、当該地域におけるいおう酸 化物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にお いて発生するいおう酸化物を大 気中に排出する者が、当該ばい 煙発生施設で燃料使用基準に適 合しない燃料の使用をしている 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 し、期間を定めて、燃料使用基 準に従うべきことを勧告するこ とができ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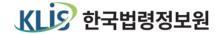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 による勧告を受けた者がその勧 告に従わなかつたときは、期間 を定めて、当該燃料使用基準に 従う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3 第一項の燃料使用基準は、環 境省令で定める燃料の種類につ いて、環境大臣が定める基準に **제15조** (계절에 따른 연료 사용에 관한 조치)

① 도도부현 지사는 유황산화물 과 관련된 매연발생시설로서 계 절에 따라 연료 사용량에 현저 한 변동이 있는 시설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지 역과 관련된 유황산화물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 당 지역의 유황산화물과 관련된 매연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유 황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 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연료사 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연료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그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연료사용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 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 을 정하여 해당 연료사용기준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연료사용기준은 환 경성령으로 정하는 연료의 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従い、同項の政令で定める地域 ごとに都道府県知事が定める。

4 環境大臣は、第一項の政令の 制定又は改廃の立案をしようと するときは、関係都道府県知事 の意見をきかなければならな い。

5 都道府県知事は、第三項の規定により燃料使用基準を定めるときは、公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れを変更し、又は廃止するときも、同様とする。

第十五条の二 (指定地域における燃料の使用に関する措置)

都道府県知事は、いおう酸化物 に係る指定地域において、特定 工場等以外の工場又は事業場に おける燃料の使用が燃料使用基 準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 は、当該工場又は事業場の設置 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燃料 使用基準に従うべきことを勧告 す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 による勧告を受けた者がその勧 告に従わなかつたときは、期限 を定めて、当該燃料使用基準に 기준에 따라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지역마다 도도부현 지사 가 정한다.

④ 환경대신은 제1항의 정령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하려 는 때에는 관계 도도부현 지사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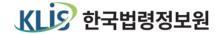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연료사용기준을 정할 때에 는 공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하거나 폐지하는 때에도 같다.

**제15조의2** (지정지역의 연료 사용에 관한 조치)

① 도도부현 지사는 유황산화물과 관련된 지정지역에서 특정공장 등 외의 공장 또는 사업장의연료 사용이 연료사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의 설치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연료사용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 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





従う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 きる。

3 第一項の燃料使用基準は、いおう酸化物に係るばい煙発生施設が設置されている特定工場等以外の工場又は事業場について定める基準とし、環境省令で定める燃料の種類について、指定が煙の総量の削減に関し環境大臣が定める基準に従い、いおう酸化物に係る指定地域ごとに都道府県知事が定め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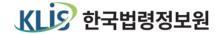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4 都道府県知事は、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指定地域を二以上の区域に区分し、それらの区域ごとに第一項の燃料使用基準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5 前条第五項の規定は、第一項の燃料使用基準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六条 (ばい煙量等の測定) ばい煙排出者は、環境省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ばい煙 発生施設に係るばい煙量又はば い煙濃度を測定し、その結果を 記録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을 정하여 해당 연료사용기준에 따를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연료사용기준은 유황산화물과 관련된 매연발생시설이 설치된 특정공장 등 외의공장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연료의 종류에 대하여 지정매연의 총량 삭감에관하여 환경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황산화물과 관련된지정지역마다 도도부현 지사가정한다.
- ④ 도도부현 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정지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마다 제1항의 연료사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⑤ 제15조제5항은 제1항의 연료사용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6조 (매연량 등의 측정) 매연배출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연발생시설과 관련된 매연량 또는 매연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 第十七条 (事故時の措置)

ばい煙発生施設を設置している 者又は物の合成、分解その他の 化学的処理に伴い発生する物質 のうち人の健康若しくは生活環 境に係る被害を生ずるおそれが あるも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 の(以下「特定物質」とい う。)を発生する施設(ばい煙 発生施設を除く。以下「特定施 設」という。)を工場若しくは 事業場に設置している者は、ば い煙発生施設又は特定施設につ いて故障、破損その他の事故が 発生し、ばい煙又は特定物質が 大気中に多量に排出されたとき は、直ちに、その事故について 応急の措置を講じ、かつ、その 事故を速やかに復旧するように 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同項 に規定する者は、直ちに、その 事故の状況を都道府県知事に通 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 し、石油コンビナート等災害防 止法(昭和五十年法律第八十四 号)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通報をした場合は、この限

## 제17조 (사고 시 조치)

①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하는 자 또는 물질의 합성, 분해, 그 밖 의 화학적 처리 시 발생하는 물 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 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특정물질"이 라 한다)이 발생하는 시설(매연 발생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특 정시설"이라 한다)을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하는 자는 매연발 생시설 또는 특정시설에 대하여 고장, 파손, 그 밖의 사고가 발 생하여 다량의 매연 또는 특정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된 때 에는 즉시 그 사고에 대하여 응 급조치를 하며, 그 사고를 신속 히 복구하도록 하 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자는 즉시 그 사고 상황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다만, 「석유 콤비나트등 재해방지법」(소화50<1975>년 법률 제84호)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りで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に規 定する事故が発生した場合において、当該事故に係る工場又は 事業場の周辺の区域における人 の健康が損なわれ、又は損なわれると認めると認っ は、その事故に係る同項に規定 する者に対し、その事故の拡大 又は再発の防止のため必要な告 できる。

#### 第十七条の二 (事業者の青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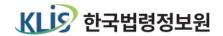
事業者は、この章に規定するばい煙の排出の規制等に関する措置のほか、その事業活動に伴うばい煙の大気中への排出の状況を把握するとともに、当該排出を抑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공장 또는 사업장 주변 구역에서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고와관련된 제1항에 따른 자에게사고의 확대 또는 재발 방지를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7조의2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이 장에 따른 매연배출규제 등에 관한 조치 외에 사업활동 시 매연의 대기 배출 상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해당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17 조의 3-제 18 조의 7)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원문	번역문
----	-----

# 第二章の二 揮発性有機化合物の 排出の規制等

# 第十七条の三 (施策等の実施の 指針)

揮発性有機化合物の排出及び飛 散の抑制に関する施策その他の 措置は、この章に規定する揮発 性有機化合物の排出の規制と事 業者が自主的に行う揮発性有機 化合物の排出及び飛散の抑制の ための取組とを適切に組み合わ せて、効果的な揮発性有機化合 物の排出及び飛散の抑制を図る

# 제2장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 출규제 등

# **제17조의3** (시책 등의 실시 지 침)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및 비산 억제에 관한 시책, 그 밖의 조치는 이 장에 따른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배출규제, 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실시하는 휘발성유 기화합물의 배출 및 비산 억제 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편성하 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및 비산 억제를 효과적으로 도모하





ことを旨として、実施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七条の四 (排出基準)

揮発性有機化合物に係る排出基準は、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排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排出物に含まれる揮発性有機化合物濃度」という。)につ機化合物濃度」という。)について、施設の種類及び規模ごとの許容限度として、環境省令で定める。

第十七条の五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設置の届出)

揮発性有機化合物を大気中に排出する者は、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を設置しよう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 所在地
- 三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 の種類
- 四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

는 것을 취지로 실시되어야 한다.

#### 제17조의4 (배출기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관련된 배출기준은 시설의 종류 및 각 규모의 허용한도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배출구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포함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농도"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성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 ①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의 종류
  - 4. 휘발성유기화합물





#### の構造

五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使用の方法

六 揮発性有機化合物の処理の 方法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 揮発性有機化合物濃度及び揮発 性有機化合物の排出の方法その 他の環境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 載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 らない。

#### 第十七条の六 (経過措置)

一の施設が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となった際現にその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設置の下海の下海を含む。)である者を含む。)であるとなり、一次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で変わるところにより、都がでででです。 第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がある。 所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설의 구조

- 5.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사용 방법
- 6.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처리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농도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방법, 그 밖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의6 (경과조치)

① 하나의 시설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된 때 실제로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공사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 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5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第十七条の七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構造等の変更の届出)

第十七条の五第一項又は前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 は、その届出に係る第十七条の 五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号まで に掲げる事項の変更をしようさ 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る 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都道府 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2 第十七条の五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七条の八** (計画変更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第十七条の五 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い て、その届出に係る揮発性有機 化合物排出施設に係る揮発性有機 化合物排出施設に係る排出基準 化合物排出施設に係る排出基準 (第十七条の四の排出基準をい う。以下この章において「排出 基準」という。)に適合しな 支 と認めるときは、その届出を受 理した日から六十日以内に限 제17조의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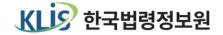
① 제17조의5제1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제17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그 뜻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의5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7조의8 (계획변경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17조의5제1 항 또는 제17조의7제1항에 따 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 와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시설과 관련된 휘발성유기화 합물농도가 시설과 관련된 배출기준(제17조의4의 배출기 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배출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 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한 자에게 그





り、その届出をした者に対し、 その届出に係る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構造若しくは揮発性有機化的 の方法若しくは揮発性有機化合物の処理の方法に関する計画の規定による計画の廃止を含む。)又は第十七条の五第一型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設置に対する計画の廃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신고와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제17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계획의 폐지를 포함한다)또는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 第十七条の九 (実施の制限)

### 제17조의9 (실시의 제한)

제17조의5제1항 또는 제17조의 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 경과한 후에만 각각 그 신고와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구조나 사용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처리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第十七条の十 (排出基準の遵守 義務)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から 揮発性有機化合物を大気中に排 出する者(以下「揮発性有機化 合物排出者」という。)は、そ の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に 係る排出基準を遵守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第十七条の十一 (改善命令等)

## 第十七条の十二 (揮発性有機化 合物濃度の測定)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者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

### **제17조의10** (배출기준의 준수의 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휘발성유 기화합물 배출자"라 한다)는 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과 관련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7조의11 (개선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구에서의 휘발성유기화합물농도가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배출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그시설과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에 처리 방법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해당 시설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7조의12 (휘발성유기화합물농 도의 측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자는 환 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当該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 に係る揮発性有機化合物濃度を 測定し、その結果を記録してお か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七条の十三 (準用)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は、第十七 条の九の規定による実施の制限 について準用する。

2 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 は、第十七条の五第一項又は第 十七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る 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準用す る。

3 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第 十七条の十一の規定による命令 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七条の十四** (事業者の責務)

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に伴う 揮発性有機化合物の大気中への 排出又は飛散の状況を把握する とともに、当該排出又は飛散を 抑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 ず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 い。 해당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과 관련된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 록해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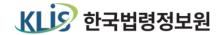
#### 제17조의13 (준용)

- ① 제10조제2항은 제17조의9에 따른 실시 제한에 대하여 준용 한다.
- ②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7조 의5제1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 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③ 제13조제2항은 제17조의11 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 다.

### 제17조의14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 상황을 파악함과 아 울러 해당 배출 또는 비산을 억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十七条の十五 (国民の努力)

何人も、その日常生活に伴う揮 発性有機化合物の大気中への排 出又は飛散を抑制するように努 めるとともに、製品の購入に当 たつて揮発性有機化合物の使用 量の少ない製品を選択すること 等により揮発性有機化合物の排 出又は飛散の抑制を促進するよ 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章の三 粉じんに関する規制

第十八条 (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設置等の届出)

- 一般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しようとする者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 所在地
  - 三 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種類 四 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構造 五 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使用 及び管理の方法

#### 제17조의15 (국민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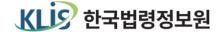
누구든지 그 일상생활 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기배출 또는 비산을 억제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제품을 구입할때에 휘발성유기화합물 사용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또는 비산의 억제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의3 분진에 관한 규제

제18조 (일반분진 발생시설의 설 치 등의 신고)

- ① 일반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3. 일반분진 발생시설의 종류
  - 4. 일반분진 발생시설의 구조
  - 5. 일반분진 발생시설의 사용 및 관리 방법





-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 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配置図そ の他の環境省令で定める書類を 添附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第一項又は次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 出に係る第一項第四号及び第五 号に掲げる事項の変更をしよう 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 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都道 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 ない。

### 第十八条の二 (経過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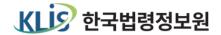
- 一の施設が一般粉じん発生施設 となつた際現にその施設を設置 している者(設置の工事をしている者を含む。)は、当該施設 が一般粉じん発生施設となった 日から三十日以内に、環境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 一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都道府 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일 반분진 발생시설의 배치도, 그 밖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 (경과조치)

- ① 하나의 시설이 일반분진 발생시설이 된 때 실제로 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 공사를 한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이 일반분진 발생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 第十八条の三 (基準遵守義務)

一般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は、当該一般粉じん発生施設について、環境省令で定める構造並びに使用及び管理に関する基準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四** (基準適合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一般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が前条の基準を遵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当該一般粉じん発生施設について同条の基準に従うべきことを命じ、又は当該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使用の一時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第十八条の五 (敷地境界基準)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に係る隣地との敷地境界における規制基準(以下「敷地境界基準」という。)は、特定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する工場又は事業場における事業活動に伴い発生し、又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で工場又は飛散するものについれ、又は飛散するものについ

#### 제18조의3 (기준준수의무)

일반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성 령으로 정하는 구조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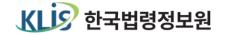
### 제18조의4 (기준적합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일반분진 발생 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18조의3 의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게 기한 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하여 제18조의3조의 기준을 따를 것 을 명령하거나 그 시설 사용의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의5 (대지경계기준)

특정분진 발생시설과 관련된 인접지와의 대지경계에서의 규제기준(이하 "대지경계기준"이라한다)은 특정분진 발생시설을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사업활동 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특정분진으로서 공장 또는사업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흩날리는 것에 대하여 특





て、特定粉じんの種類ごとに、 工場又は事業場の敷地の境界線 における大気中の濃度の許容限 度として、環境省令で定める。

第十八条の六 (特定粉じん発生 施設の設置等の届出)

特定粉じんを大気中に排出し、 又は飛散させる者は、特定粉じ ん発生施設を設置しようとする 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次の事項を都道府県 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 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 所在地
- 三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種類 四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構造 五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使用 の方法
- 六 特定粉じんの処理又は飛散 の防止の方法
-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配置図、 特定粉じんの排出の方法その他 の環境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 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ばなら

정분진의 종류마다 공장 또는 사업장의 대지경계선에서의 대 기 중 농도의 허용한도로서 환 경성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6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설치 등의 신고)

- ① 특정분진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흩날리는 자는 특정분 진 발생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다음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3.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종류
  - 4.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구조
  - 5.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사용 방법
  - 6. 특정분진의 처리 또는 비산 방지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배치도, 특정분진의 배출 방법, 그 밖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ない。

3 第一項又は次条第一項の規定 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 出に係る第一項第四号から第六 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変更をし よう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を 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 ならない。

4 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八条の七 (経過措置)

一の施設が特定粉じん発生施設 となつた際現にその施設を設置 している者(設置の工事をしている者を含む。)であつて特出し、 粉じんを大気中に排出された。 粉じんを大気中に排出を施設となるものは、 当該施設となった。 特定粉じん発生施設となった。 がら三十日以内に、環境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条第一 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 ③ 제1항 또는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은 제3항에 따른 신고 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8조의7 (경과조치)

① 하나의 시설이 특정분진 발생시설이 된 때 실제로 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 공사를 한자를 포함한다)로서 특정분진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흩날리는 자는 해당 시설이 발생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제18조의6제1항 각 호의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6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18 조의 8-제 18 조의 35)

• 국 가·지 역: 일본

• 법률 번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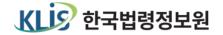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 원문 번역문

## **第十八条の八** (計画変更命令等)

### 제18조의8 (계획변경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18조의6제1 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와 관련된 특정분진 발생시설이 설치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대지경계선 에서 대기 중 특정분진의 농도 가 대지경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 고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 에 그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신 고와 관련된 특정분진 발생시설 의 구조나 사용 방법, 특정분진 의 처리 방법이나 비산방지방법





じんの処理の方法若しくは飛散 の防止の方法に関する計画の変 更(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 る計画の廃止を含む。)又は同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 る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設置に 関する計画の廃止を命ずること ができる。

### 第十八条の九 (実施の制限)

第十八条の六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又は同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六 その 居出が受理されたければいいでない。 それぞれ、その届出に係る特定とはを表生施設を設置しては発生施設をは特定粉にのの構造若しくは発生を表しては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十(敷地境界基準の遵守義務)

特定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する 工場又は事業場における事業活動に伴い発生し、又は飛散する 特定粉じんを工場又は事業場から大気中に排出し、又は飛散さ 에 관한 계획의 변경(같은 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의9 (실시의 제한)

제18조의6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60일 이 경과한 후에만 각각 그 신고 와 관련된 특정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특정분진의 처리 방 법이나 비산방지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의10** (대지경계기준의 준수의무)

특정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시 발생하거나 흩날리는 특정분 진을 공장 사업장에서 대 기 중으로 배출하거나 흩날리는





せる者(以下「特定粉じん排出 者」という。)は、敷地境界基 準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十一 (改善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特定粉じん排 出者が排出し、又は飛散させ事業 大適大の当該工場又はる事業 場の敷地の境界線におります。 中の濃度が敷地を認めるときない。 を認めるとは、期にといる。 をおして当該特をといるができる。 とのできる。 をのできる。 をができる。 をができる。 をがあればれば、 とのできる。 をのできる。

## **第十八条の十二** (特定粉じんの 濃度の測定)

特定粉じん排出者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工場又は事業場の敷地の境界線における大気中の特定粉じんの濃度を測定し、その結果を記録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자(이하 "특정분진 배출자"라 한다)는 대지경계기준을 준수하 여야 한다.

### 제18조의11 (개선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분진 배출 자가 배출하거나 흩날리는 특정 분진의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 의 대지경계선의 대기 중 농도 가 대지경계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분진 배출자에게 기한을 정 하여 해당 특정분진 발생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의 개선, 특정 분진의 처리 방법이나 비산방지 방법의 개선을 명령하거나 해당 특정분진 발생시설 사용의 일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8조의12 (특정분진의 농도 측 정)

특정분진 배출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 또는 사업장의 대지경계선에서의 대기 중 특정분진의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 第十八条の十三 (準用)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は、第十八 条の九の規定による実施の制限 について準用する。

2 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 は、第十八条第一項、第十八条 の二第一項、第十八条の六第一 項又は第十八条の七第一項の規 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 準用する。

3 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第 十八条の四及び第十八条の十一 の規定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 する。

### 第十八条の十四 (作業基準)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に係る規制基準(以下「作業基準」という。)は、特定粉じんの種類及び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種類ごとに、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方法に関する基準として、環境省令で定める。

## 第十八条の十五 (特定粉じん排出 等作業の実施の届出)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を伴う建設工事(以下「特定工事」という。)の発注者(建設工事(他の者から請け負つたものを除

#### 제18조의13 (준용)

- ① 제10조제2항은 제18조의9에 따른 실시 제한에 대하여 준용하다.
- ②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8조 제1항, 제18조의2제1항, 제18 조의6제1항 또는 제18조의7제1 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대하 여 준용한다.
- ③ 제13조제2항은 제18조의4 및 제18조의11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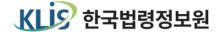
### 제18조의14 (작업기준)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과 관련된 규제기준(이하 "작업기준"이라 한다)은 특정분진의 종류 및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마다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15**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 신고)

①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이 따르는 건설공사(이하 "특정공사" 라 한다)의 발주자[건설공사(다른 자와 도급 한 것을





く。) の注文者をいう。以下同 じ。) 又は特定工事を請負契約 によらないで自ら施工する者

(次項において「特定工事の発注者等」という。)は、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開始の日の十四日前までに、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に掲げる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らない。ただし、災害その他非常の事態の発生により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を緊急に行う必要があ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特定工事を施工する者の氏 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に法 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者の 氏名
- 三 特定工事の場所
- 四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種類
- 五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実 施の期間

六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対象となる建築物等の部分における特定建築材料の種類並びにその使用箇所及び使用面積

제외한다)의 주문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정공사를 도급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자(제2항에서 "특정공사의 발주자 등"이라 한다)는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 개시일의 14일 전까지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에비상사태의 발생으로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을 긴급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특정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3. 특정공사의 장소
- 4.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종류
- 5.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실시 기간
- 6.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부 분의 특정건축재료의 종류, 그 사용장소 및 사용면적





七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方法

- 2 前項ただし書の場合において、当該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を伴う特定工事の発注者等は、速やかに、同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3 前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 は、当該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 の対象となる建築物等の配置図 その他の環境省令で定める事項 を記載した書類を添付しなけれ 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十六** (計画変更命 令)

都道府県知事は、前条第一項の 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 おいて、その届出に係る特定粉 じん排出等作業の方法が作業基 準に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 は、その届出を受理した日出を け四日以内に限り、その届出に係る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 対し、その届出に係る 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 関する計画の変更を命ずること ができる。

- 7.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이 따르 는 특정공사의 발주자 등은 신 속히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도 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는 해당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 의 배치도, 그 밖의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의16 (계획변경명령)

도도부현 지사는 제18조의15제 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에 그 신고와 관련된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 방법이 작업기준 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날부 터 14일 이내에 그 신고한 자 에게 그 신고와 관련된 특정분 진 배출 등 작업의 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第十八条の十七 (解体等工事に係る調査及び説明等)

建築物等を解体し、改造し、又 は補修する作業を伴う建設工事 (当該建設工事が特定工事に該 当しないことが明らかなものと して環境省令で定めるものを除 く。以下「解体等工事」とい う。) の受注者(他の者から請 け負つた解体等工事の受注者を 除く。次項及び第二十六条第一 項において同じ。)は、当該解 体等工事が特定工事に該当する か否かについて調査を行うとと もに、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当該解体等工事の発注 者に対し、当該調査の結果につ いて、環境省令で定める事項を 記載した書面を交付して説明し 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 おいて、当該解体等工事が特定 工事に該当するときは、第十八 条の十五第一項第四号から第七 号までに掲げる事項その他環境 省令で定める事項を書面に記載 して、これらの事項について説 明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前段の場合において、解 体等工事の発注者は、当該解体 等工事の受注者が行う同項の規 제18조의17 (해체 등 공사 관련 조사 및 설명 등)

① 건축물 등을 해체, 개조 또 는 보수하는 작업이 따르는 건 설공사(해당 건설공사가 특정공 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한 공사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해체 등 공사"라 한다)의 수주자(다른 자와 도급 계약을 한 해체 등 공사의 수주자를 제외한다. 제2 항 및 제26조제1항에서 같다) 는 해당 해체 등 공사가 특정공 사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환 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에 게 그 조사 결과에 대하여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 설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 해당 해체 등 공 사가 특정공사에 해당하는 때에 는 제18조의15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그 밖에 환 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 에 기재하여 이들 사항에 대하 여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의 경우에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해체 등 공사의 수주자가 하는 조사





定による調査に要する費用を適 正に負担することその他当該調 査に関し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 とにより、当該調査に協力しな ければならない。

3 解体等工事を請負契約によら ないで自ら施工する者(第二十 六条第一項において「自主施工 者」という。)は、当該解体等 工事が特定工事に該当するか否 かについて調査を行わなければ ならない。

4 第一項及び前項の規定による 調査を行つた者は、当該調査に 係る解体等工事を施工するとき 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当該調査の結果その他環 境省令で定める事項を、当該解 体等工事の場所において公衆に 見やすいように掲示しなければ 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十八 (作業基準の遵 守義務)

特定工事を施工する者は、当該 特定工事における特定粉じん排 出等作業について、作業基準を 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부담 하고 그 밖에 해당 조사에 관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해 당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해체 등 공사를 도급 계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직접 시공하는 자(제26조제1항에서 "자주시공 자"라 한다)는 해당 해체 등 공사가 특정공사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한 자는 해당 조사와 관련된 해체 등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해당 조사의 결과, 그 밖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해체 등 공사의 장소에서일반인이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18** (작업기준의 준수의 무)

특정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해당 특정공사의 특정분진 배출 등 대하여 작업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 第十八条の十九 (作業基準適合 命令等)

都道府県知事は、特定工事を施工する者が当該特定工事における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について作業基準を遵守してい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の者に対し、期限を定めて当該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について作業基準に従うべきことを命じ、又は当該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の一時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 **第十八条の二十** (発注者の配 慮)

特定工事の発注者は、当該特定 工事を施工する者に対し、施工 方法、工期、工事費その他当該 特定工事の請負契約に関する事 項について、作業基準の遵守を 妨げるおそれのある条件を付さ ないように配慮しなければなら ない。

## 第二章の四 水銀等の排出の規制 等

第十八条の二十一 (施策等の実施の指針)

### **제18조의19** (작업기준적합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특정공사를 시 공하는 자가 해당 특정공사의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에 대하 여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에 대하여 작업기 준에 따를 것을 명령하거나 해 당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의 일 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의20 (발주자의 배려)

특정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특정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 법, 공사 기간, 공사비, 그 밖에 해당 특정공사의 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작업기준의 준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 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배려하 여야 한다.

## 제2장의4 수은 등의 배출 규제 등

**제18조의21** (시책 등의 실시 지 침)





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抑制 に関する施策その他の措置は、 条約の的確かつ円滑な実施を図 るため、この章に規定する水銀 等の排出の規制と事業者が自主 的に行う水銀等の排出の抑制の ための取組とを適切に組み合わ せて、効果的な水銀等の大気中 への排出の抑制を図ることをら として、実施されなければなら ない。

### 第十八条の二十二 (排出基準)

水銀等に係る排出基準は、水銀 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削減に関 する技術水準及び経済性を勘案 し、その排出が可能な限り削減 されるよう、水銀排出施設の排 出口から大気中に排出される排 出物に含まれる水銀等の量(以 下「水銀濃度」という。)につ いて、施設の種類及び規模ごと の許容限度として、環境省令で 定める。

## 第十八条の二十三 (水銀排出施設の設置の届出)

水銀等を大気中に排出する者は、水銀排出施設を設置しよう

수은 등의 대기 배출 억제에 관한 시책, 그 밖의 조치는 조약의 정확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장에 따른 수은 등의 배출 규제와 사업자가자주적으로 실시하는 수은 등의배출 억제를 위한 조치를 적절히 편성하여 효과적인 수은 등의 대기 배출 억제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실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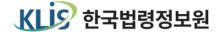
#### 제18조의22 (배출기준)

수은 등에 관한 배출기준은 수 은 등의 대기 배출 삭감에 관한 기술 수준 및 경제성을 감안하 여 수은 배출을 가능한 한 삭감 하도록 수은배출시설의 배출구 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 출물에 포함되는 수은 등의 양 (이하 "수은농도"라 한다)에 대 하여 시설의 종류 및 각 규모의 허용한도로서 환경성령으로 정 한다.

제18조의23 (수은배출시설의 설 치 신고)

① 수은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 하는 자는 수은배출시설을 설치





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次の事項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氏名又は名称及び住所並び に法人にあつては、その代表 者の氏名
- 二 工場又は事業場の名称及び 所在地
- 三 水銀排出施設の種類
- 四水銀排出施設の構造
- 五 水銀排出施設の使用の方法 六 水銀等の処理の方法
- 2 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は、 水銀濃度及び水銀等の大気中へ の排出の方法その他の環境省令 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た書類を 添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二十四 (経過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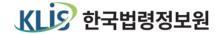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一の施設が水銀排出施設となつ た際現にその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 (設置の工事をしている者 を含む。)であつて水銀等を大 気中に排出するものは、当該施 設が水銀排出施設となった日 いるこうにより、環境省令で項 めるとこうにより、前条第一県 あるところにより、都道府県知 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하려는 때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 명
- 2.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3. 수은배출시설의 종류
- 4. 수은배출시설의 구조
- 5. 수은배출시설의 사용 방법
- 6. 수은 등의 처리 방법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는 수 은농도 및 수은 등의 대기 배출 방법, 그 밖의 환경성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4 (경과조치)

① 하나의 시설이 수은배출시설이 된 때 실제로 그 시설을 설치한 자(설치 공사를 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수은 등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수은배출시설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23제1항 각호의 사항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前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八条の二十五 (水銀排出施設の構造等の変更の届出)

第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又は前 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に係る第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第四号から第 六号までに掲げる事項の変更をしようとするときは、環境省令 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旨 を都道府県知事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2 第十八条の二十三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ついて準用する。

**第十八条の二十六** (計画変更命 令等)

都道府県知事は、第十八条の二 十三第一項又は前条第一項の規 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場合にお いて、その届出に係る水銀排出 施設に係る水銀濃度がその水銀 排出施設に係る第十八条の二十 二の排出基準(以下この章にお いて「排出基準」という。)に 適合しないと認めるときは、そ ② 제18조의23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25 (수은배출시설의 구조 등의 변경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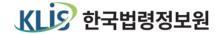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① 제18조의23제1항 또는 제 18조의2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와 관련된 제 18조의23제1항제4호부터 제6 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 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8조의23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8조의26 (계획변경명령 등)

도도부현 지사는 제18조의23제 1항 또는 제18조의25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 고와 관련된 수은배출시설과 관 련된 수은농도가 그 수은배출시 설과 관련된 제18조의22의 배 출기준(이하 이 장에서 "배출기 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





の届出を受理した日から六十日 以内に限り、その届出をした者 に対し、その届出に係る水銀排 出施設の構造若しくは使用の方法 は大銀等の処理の方法 に関する計画の変更(前条第一 項の規定による届出に係る計画 の廃止を含む。)又は第十八る届 出に係る水銀排出施設の設置に 関する計画の廃止を命ずること ができる。

# 第十八条の二十七 (実施の制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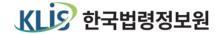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第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又は第十八条の二十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をした者は、その届出をしたければ、それぞれの届出に係る水銀排出施設を開出をしてはその届出に係る水銀帯造者しくはではならない。

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신고를 한 자에게 그 신고와 관련된 수은배출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수은 등의 처리 방법에 관한 계획의 변경(제18조의25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계획의 폐지를 포함한다) 또는 제18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수은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의27 (실시의 제한)

제18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18조의2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그 신고가 수리 된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만 각각 그 신고와 관련된 수은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신고 와 관련된 수은배출시설의 구조 나 사용 방법, 수은 등의 처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第十八条の二十八 (排出基準の 遵守義務)

水銀排出施設から水銀等を大気中に排出する者(以下「水銀排出者」という。)は、その水銀排出施設に係る排出基準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二十九 (改善勧告等 及び改善命令等)

2 都道府県知事は、前項の規定 による勧告を受けた者がその勧 告に従わないときは、期限を定 めて、その勧告に係る措置をと る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

### 제18조의28 (배출기준의 준수의 무)

수은배출시설에서 수은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수은배출자"라 한다)는 그 수 은배출시설에 관한 배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9** (개선권고 등 및 개 선명령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수은배출자가 배출하는 수은 등의 배출구에서의 수은농도가 배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수은 등을 계속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은배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해당수은배출시설의 구조나 사용 방법, 수은 등의 처리 방법의 개선 또는 해당 수은배출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그 밖에 수은 등의 대기 배출을 감소시키기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그 권고 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 한을 정하여 그 권고에 관한 조 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る。

## 第十八条の三十 (水銀濃度の測定)

水銀排出者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水銀排出施設に係る水銀濃度を測定し、 その結果を記録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三十一 (準用)

第十条第二項の規定は、第十八 条の二十七の規定による実施の 制限について準用する。

2 第十一条及び第十二条の規定 は、第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又 は第十八条の二十四第一項の規 定による届出をした者について 準用する。

3 第十三条第二項の規定は、第 十八条の二十九第一項の規定に よる勧告及び同条第二項の規定 による命令について準用する。

## 第十八条の三十二 (要排出抑制施設の設置者の自主的取組)

工場又は事業場に設置される水 銀等を大気中に排出する施設 (水銀排出施設を除く。)のう ち、水銀等の排出量が相当程度

### 제18조의30 (수은농도의 측정)

수은배출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은배출 시설과 관련된 수은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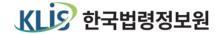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 제18조의31 (준용)

- ① 제10조제2항은 제18조의27 에 따른 실시의 제한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1조 및 제12조는 제18조 의23제1항 또는 제18조의24제 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 대 하여 준용한다.
- ③ 제13조제2항은 제18조의29 제1항에 따른 권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18조의32 (배출억제필요시설 설치자의 자주적 대처)

공장 또는 사업장에 설치되는 수은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 는 시설(수은배출시설을 제외한 다) 중 수은 등의 배출량이 상





多い施設であつて、その排出を 抑制することが適当であるもの として政令で定めるもの(以下 この条において「要排出抑制施 設」という。)を設置している 者は、その要排出抑制施設に係 る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に関 し、単独で又は共同して、自ら 遵守すべき基準を作成し、水銀 濃度を測定し、その結果を記録 し、これを保存することその他 の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を抑 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 るとともに、当該措置の実施の 状況及びその評価を公表しなけ 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三十三**(事業者の責務)

前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に伴う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状況を把握し、当該排出を抑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にめるとともに、国が実施する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抑制に関する施策に協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당한 정도로 많은 시설로서 배출을 억제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하는 것(이하이 조에서 "배출억제필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그시설과 관련된 수은 등의 대기배출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의 작성, 수은농도의 측정, 그 결과의 기록·보존, 그 밖의 수은 등의 대기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과 아울리 해당 조치의 실시 상황 및그평가를 공표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3 (사업자의 책무)

제18조의32에 따르는 것 외에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른 수은 등의 대기 상황을 파악하고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아울러 국가가실시하는 수은 등의 대기 배출의 억제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第十八条の三十四 (国の施策)

国は、我が国における水銀等の 大気中への排出の状況を把握 し、その結果を公表すること、 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抑制 のための技術に関する情報を図 を理し、その成果の普及を図 ることその他の水銀等の大気中 への排出の抑制に関する施策の 実施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三十五** (地方公共団体の施策)

地方公共団体は、事業者に対し、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を抑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ずること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な情報の提供を行うよう努めるともに、住民に対し、水銀等の大気中への排出の抑制に関する知識の普及を図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제18조의34 (국가의 시책)

국가는 일본의 수은 등의 대기 배출 상황 파악 및 그 결과의 공표, 수은 등의 대기 배출 억 제를 위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정리, 그 성과의 보급 도 모, 그 밖의 수은 등의 대기 배 출 억제에 관한 시책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5** (지방공공단체의 시 책)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자에게 수 은 등의 대기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주 민에게 수은 등의 대기 배출 억 제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18 조의 36-제 25 조의 6)

• 국 가·지 역: 일본

원문

• 법 률 번 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 제2장의5 유해대기오염물질대책 第二章の五 有害大気汚染物質対策 の推進

第十八条の三十六 (施策等の実 施の指針)

有害大気汚染物質による大気の 汚染の防止に関する施策その他 の措置は、科学的知見の充実の 下に、将来にわたつて人の健康 に係る被害が未然に防止される ようにすることを旨として、実 施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의 추진

번역문

제18조의36 (시책 등의 실시 지 침)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 오염 방지에 관한 시책, 그 밖 의 조치는 충분한 과학적 지식 을 바탕으로 장래에 사람의 건 강과 관련된 피해를 미연에 방 지하는 것을 취지로 실시되어야 하다.





## 第十八条の三十七 (事業者の責務)

事業者は、その事業活動に伴う 有害大気汚染物質の大気中への 排出又は飛散の状況を把握する とともに、当該排出又は飛散を 抑制するために必要な措置を講 ず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 い。

### 第十八条の三十八 (国の施策)

国は、地方公共団体との連携の下に有害大気汚染物質による大気の汚染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の調査の実施に努めるとともに、有害大気汚染物質の人の健康に及ぼす影響に関する科学的知見の充実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国は、前項の調査の実施状況 及び同項の科学的知見の充実の 程度に応じ、有害大気汚染物質 ごとに大気の汚染による人の健 康に係る被害が生ずるおそれの 程度を評価し、その成果を定期 的に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国は、事業者が前条の措置を 講ずることを促進し、及び次条 の地方公共団体の施策が推進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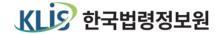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 **제18조의37**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 시 발생하는 유해대기물질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 상황을 파악함과 아 울러 해당 배출 또는 비산을 억 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8 (국가의 시책)

- ① 국가는 지방공공단체와 연대하여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고, 아울러 유해대기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식견을 넓히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의 조사의 실시 상황 및 과학적 식견의 정도에 따라 각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다.
- ③ 국가는 사업자가 제18조의 37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진 하고, 제18조의39의 지방공공





れることに資するため、有害大 気汚染物質の排出又は飛散の抑 制のための技術に関する情報を 収集整理し、及びその成果の普 及を図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 らない。

## **第十八条の三十九** (地方公共団体の施策)

地方公共団体は、その区域に係る有害大気汚染物質による大気の汚染の状況を把握するための調査の実施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地方公共団体は、事業者に対し、第十八条の三十七の措置を 講ずることを促進するために必 要な情報の提供を行うように努 めるとともに、住民に対し、有 害大気汚染物質による大気の汚 染の防止に関する知識の普及を 図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八条の四十 (国民の努力)

何人も、その日常生活に伴う有害大気汚染物質の大気中への排出又は飛散を抑制するよう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단체의 시책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또는 비산 억제를 위한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그 성과의 보급을 도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9** (지방공공단체의 시 책)

- ① 지방공공단체는 그 구역과 관련된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 한 대기오염상황을 파악하기 위 한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 ② 지방공공단체는 사업자에게 제18조의37의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 주민에게 유해대기오염 물질로 의한 대기 오염 방지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의40 (국민의 노력)

누구든지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 하는 유해대기오염물질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을 억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第三章 自動車排出ガスに係る許容 限度等

### 第十九条 (許容限度)

環境大臣は、自動車が一定の条件で運行する場合に発生し、大気中に排出される排出物に含まれる自動車排出ガスの量の許容限度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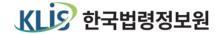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 2 自動車排出ガスによる大気の 汚染の防止を図るため、国土交 通大臣は、道路運送車両法に基 づく命令で、自動車排出ガスの 排出に係る規制に関し必要な事 項を定める場合には、前項の許 容限度が確保されるとともに次 条第一項の許容限度の確保に資 することとなるように考慮しな ければならない。
- 3 環境大臣は、特定特殊自動車 (特定特殊自動車排出ガスの規 制等に関する法律(平成十七年 法律第五十一号)第二条第一項 に規定する特定特殊自動車をい う。)が一定の条件で使用され る場合に発生し、大気中に排出 される排出物に含まれる特定特 殊自動車排出ガス(同条第三項 に規定する特定特殊自動車排出

## 제3장 자동차배출가스 관련 허용한도 등

### 제19조 (허용한도)

- ① 환경대신은 자동차가 일정 조건에서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 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 출물에 포함된 자동차배출가스 량의 허용한도를 정하여야 한 다.
- ② 국토교통대신은 자동차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도로운송차량 법」에 따른 명령으로 자동차배 출가스의 배출과 관련된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용한도가 확보되고 아울러 제19조의2제1 항의 허용한도의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③ 환경대신은 특정특수자동차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평성 17<2005>년 법률 제51호) 제 2조제1항에 따른 특정특수자동 차를 말한다]가 일정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배출물에 포함된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정특수





ガスをいう。次項において同 じ。)の量の許容限度を定めな ければならない。

4 特定特殊自動車排出ガスによる大気の汚染の防止を図るため、特定特殊自動車排出ガス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第五条に規定する主務大臣は、同条の技術上の基準を定める場合には、前項の許容限度が確保されるよ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十九条の二

環境大臣は、前条第一項の許容限度を定めるに当たつて自動車排出がスによる大気の汚染の防止を図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自動車の燃料の性状に関する許容限度又は自動車の燃料に含まれる物質の量の許容限度を定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自動車排出ガスによる大気の 汚染の防止を図るため、経済産 業大臣は、揮発油等の品質の確 保等に関する法律(昭和五十一 年法律第八十八号)に基づく命 令で自動車の燃料に係る規制に 関し必要な事項を定める場合に は、前項の許容限度が確保され 자동차배출가스를 말한다. 제4 항에서 같다)의 양의 허용한도 를 정하여야 한다.

④ 「특정특수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무대신은 특정특수자 동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조의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허용한도가 확보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제19조의2

① 환경대신은 제19조제1항의 허용한도를 정하는 경우에 자동 차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자동차 연료의 성 질과 상태(性状)에 관한 허용한 도 또는 자동차 연료에 포함된 물질의 양의 허용한도를 정하여 야 한다.

② 경제산업대신은 자동차배출 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 하기 위하여 「휘발유 등의 품 질 확보 등에 관한 법률」(소화 51 년 법률 제88호)에 따른 명령으로 자동차의 연료와 관련된 규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るように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条** (自動車排出ガスの濃度の測定)

都道府県知事は、交差点等があるため自動車の交通が渋滞することにより自動車排出ガスによる大気の著しい汚染が生じ、又は生ずるおそれがある道路の部分及びその周辺の区域について、大気中の自動車排出ガスの濃度の測定を行なうものとする。

第二十一条 (測定に基づく要請等)

2 環境大臣は、前項の環境省令を定め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

의 허용한도가 확보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 측정)

도도부현 지사는 교차로 등이 있어 자동차 교통이 정체되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심각한 대기 오염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도로의 부분 및 그 주변 구역에 대하여 자동차배출 가스의 대기 중 농도를 측정한 다.

제21조 (측정에 따른 요청 등)

① 도도부현 지사는 제20조의 측정을 한 경우에 자동차배출가 스로 인하여 도로의 부분 및 그 주변 구역과 관련된 대기 오염이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에 「도로교통법」(소화35<1960>년 법률제105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② 환경대신은 제1항의 환경성 령을 정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かじめ、国家公安委員会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の規 定により要請する場合を除くほ か、前条の測定を行つた場合に おいて特に必要があると認める ときは、当該道路の部分の構造 の改善その他自動車排出ガスの 濃度の減少に資する事項に関 し、道路管理者又は関係行政機 関の長に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 きる。

### 第二十一条の二 (国民の努力)

何人も、自動車を運転し、若し くは使用し、又は交通機関を利 用するに当たつては、自動車排 出ガスの排出が抑制されるよう 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四章 大気の汚染の状況の監視等

### 第二十二条 (常時監視)

都道府県知事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大気の汚染(放射性物質によるものを除く。第二十四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の状況を常時監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국가공안위원회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20조의 측정을 한 경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도로 부분의 구조 개선, 그 밖에 자동차배출가스의 농도 감소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도로관리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말할수 있다.

### 제21조의2 (국민의 노력)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전 또는 사용하거나 교통기관을 이용하 는 경우에는 자동차배출가스의 배출이 억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장 대기오염상황의 감시 등

### 제22조 (상시감시)

① 도도부현 지사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오염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외한다. 제24조제1항에서 같다)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2 都道府県知事は、環境省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前項の常 時監視の結果を環境大臣に報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3 環境大臣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放射性物質 (環境省令で定めるものに限る。第二十四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による大気の汚染の状況を常時監視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十三条 (緊急時の措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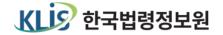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都道府県知事は、大気の汚染が 著しくなり、人の健康又は生活 環境に係る被害が生ずるおそれ がある場合として政令で定める 場合に該当する事態が発生した ときは、その事態を一般に周知 させるとともに、ばい煙を排出 する者、揮発性有機化合物を排 出し、若しくは飛散させる者又 は自動車の使用者若しくは運転 者であつて、当該大気の汚染を さらに著しくするおそれがある と認められるものに対し、ばい 煙の排出量若しくは揮発性有機 化合物の排出量若しくは飛散の 量の減少又は自動車の運行の自

- ② 도도부현 지사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상시 감시 결과를 환경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환경대신은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 물질(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4조제2항에서 같다)에의한 대기 오염 상황을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긴급 시 조치)

① 도도부현 지사는 대기 오염 이 심해져 사람의 건강 또는 생 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태를 일반 에게 주지시키고, 매연을 배출 하는 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거나 흩날리는 자 또는 자동차 사용자나 운전자로서 해 당 대기 오염을 더욱 심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매연 배출량, 휘발성유기화합물 의 배출량이나 비산되는 양의 감소 또는 자동차 운행의 자주 적 제한에 대하여 협력을 요구 하여야 한다.





主的制限について協力を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

2 都道府県知事は、気象状況の 影響により大気の汚染が急激に 著しくなり、人の健康又は生活 環境に重大な被害が生ずる場合 として政令で定める場合に該当 する事態が発生したときは、当 該事態がばい煙又は揮発性有機 化合物に起因する場合にあつて 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 より、ばい煙排出者又は揮発性 有機化合物排出者に対し、ばい 煙量若しくはばい煙濃度又は揮 発性有機化合物濃度の減少、ば い煙発生施設又は揮発性有機化 合物排出施設の使用の制限その 他必要な措置をとるべきことを 命じ、当該事態が自動車排出が スに起因する場合にあつては、 都道府県公安委員会に対し、道 路交通法の規定による措置をと るべきことを要請するものとす る。

#### 第二十四条 (公表)

都道府県知事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都道府県の区域に係る大気の汚染の状況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도도부현 지사는 기상 상황 의 영향으로 대기 오염이 급격 히 심해져 사람의 건강 또는 생 활환경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 는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에 해당 사태가 매연 또는 휘 발성유기화합물이 워인인 경우 에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연배출자 또는 휘발성유 기화합물배출자에게 매연량, 매 연농도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농도의 감소, 매연발생시설 또 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의 사용 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하고, 해 당 사태가 자동차배출가스가 원 인인 경우에는 도도부현 공안위 원회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제24조 (공표)

① 도도부현 지사는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도부현 구역과 관련된 대기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2 環境大臣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放射性物質による大気の汚染の状況を公表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四章の二 損害賠償

### 第二十五条 (無過失責任)

2 一の物質が新たに健康被害物質となつた場合には、前項の規定は、その物質が健康被害物質となつた日以後の当該物質の排出による損害について適用する。

② 환경대신은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물질에 의한 대기 오염 상황을 공표하여야 한다.

### 제4장의2 손해배상

### 제25조 (무과실책임)

① 공장 또는 사업장의 사업활동 시 발생하는 건강피해물질 (매연, 특정물질 또는 분진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대기 배출(비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친 때에는 해당 배출과 관련된 사업자는 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하나의 물질이 새로이 건강 피해물질이 된 경우에는 제1항 은 그 물질이 건강피해물질이 된 날 이후의 해당 물질의 배출 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적용한 다.





#### 第二十五条の二

## 第二十五条の三 (賠償についての しんしやく)

第二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損害の発生に関して、天災その他の不可抗力が競合したときは、裁判所は、損害賠償の責任及び額を定めるについて、これをしんしやくすることができる。

## 第二十五条の四 (消滅時効)

第二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損害賠償の請求権は、被害者又はその法定代理人が損害及び賠償義務者を知つた時から三年間行

## 제25조의2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해가 둘이상의 사업자의 건강피해물질의 대기 배출로 인하여 발생하여 해당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민법」(명치29<1896>년 법률 제89호) 제719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그 원인이 된정도가 매우 적다고 인정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재판소는 그 자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할때에 그 사정을 고려할 수 있다.

## 제25조의3 (배상에 대한 참작)

25조제1항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천재(天災), 그 밖의 불가항력이 경합한 때에는 재판소는 손해배상의 책임 및액수를 정할 때에 이를 참작할수 있다.

## 제25조의4 (삭감시효)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배상의무자를 안 때부터 3년 동안 이행하지





なわないときは、時効によつて 消滅する。損害の発生の時から 二十年を経過したときも、同様 とする。

# **第二十五条の五** (鉱業法の適用)

第二十五条第一項に規定する損害賠償の責任について鉱業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八十九号)の適用があるときは、同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 第二十五条の六 (適用除外)

この章の規定は、事業者が行なう事業に従事する者の業務上の負傷、疾病及び死亡に関しては、適用しない。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손해 발생 시부터 20년이경과한 때에도 같다.

## 제25조의5 (광업법의 적용)

제25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하여 「광업법」 (소화25<1950>년 법률 제289조)을 적용하는 때에는 그 법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5조의6 (적용제외)

이 장의 규정은 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사망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기오염방지법」 (제 26 조-제 37 조)

• 국 가·지 역: 일본

• 법 **률 번 호**: 소화43<1968>년 법률 제97호

공 포 일: 1947년 6월 10일
개 정 일: 2017년 6월 2일

## 원문 번역문

#### 第五章 雜則

## 第二十六条 (報告及び検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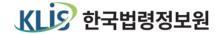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環境大臣又は都道府県知事は、に に必要な限度の施行に必要な限度の に必ずで定めるとことでででなるとことででででででがない。 で定めるといる者といる者、特定工事を施工する者、特定工事を施工する者、 では都道にいる。 で定めるとことではいる。 で定めるとことではいる。 は事業場にいる者、いる者を発生のる者、 を設置している者、 を設定している者、 を記述る者、 を記述るる。 を記述る。 を記述るる。 を記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る。 を言述

## 제5장 잡칙

## 제26조 (보고 및 검사)

① 환경대신 또는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매연발생시설을 설치한자, 특정시설을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한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설치한자, 일반분진 발생시설을 설치한자, 특정분진 배출자, 해체 등 공사의 발주자나 수주자, 자주시공자, 특정공사를 시공하는 자나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자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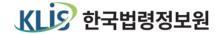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くは水銀排出施設を設置してい る者に対し、ばい煙発生施設の 状況、特定施設の事故の状況、 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の状 況、一般粉じん発生施設の状 況、特定粉じん発生施設の状 況、解体等工事に係る建築物等 の状況、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 の状況。水銀排出施設の状況そ の他必要な事項の報告を求め、 又はその職員に、ばい煙発生施 設を設置している者、特定施設 を工場若しくは事業場に設置し ている者、揮発性有機化合物排 出施設を設置している者、一般 粉じん発生施設を設置している 者若しくは特定粉じん排出者の 工場若しくは事業場、解体等工 事に係る建築物等、解体等工事 の現場若しくは水銀排出施設を 設置している者の工場若しくは 事業場に立ち入り、ばい煙発生 施設。ばい煙処理施設。特定施 設、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 設、一般粉じん発生施設、特定 粉じん発生施設、解体等工事に 係る建築物等、水銀排出施設そ の他の物件を検査させることが できる。

매연발생시설상황, 특정시설의 사고상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 출시설상황, 일반분진 발생시설 상황, 특정분진 발생시설상황, 해체 등 공사와 관련된 건축물 등 상황,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 상황, 수은배출시설의 상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 구하거나 또는 그 직원에게 매 연발생시설을 설치한 자. 특정 시설을 공장이나 사업장에 설치 한 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 일반분진 발 생시설을 설치한 자나 특정분진 배출자의 공장이나 사업장, 해 체 등 공사와 관련된 건축물 등, 해체 등 공사의 현장이나 수은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공 장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매연 발생시설, 매연처리시설, 특정 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 설, 일반분진 발생시설, 특정분 진 발생시설, 해체 등 공사와 관련된 건축물 등, 수은배출시 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2 前項の規定による環境大臣による報告の徴収又はその職員による立入検査は、大気の汚染により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係る被害が生ず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緊急の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場合に行うものとする。
- 3 第一項の規定により立入検査 をする職員は、その身分を示す 証明書を携帯し、関係人に提示 しなければならない。
- 4 第一項の規定による立入検査 の権限は、犯罪捜査のために認 められたものと解釈してはなら ない。

## 第二十七条 (適用除外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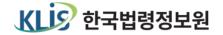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電気事業法(昭和三十九年法律第百七十号)第二条第一項第十八号に規定する電気工作物、第五十九年法律第十三年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十三条第十三条第十三条第十三条第一項の経済とは、第十三条第一項の経済とは、特定める施設、特定施設、特定施設、特定施設、特定施設、特定施設、特定を設した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光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発生施設、特定粉じん光生施設、特定粉じん。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대신의 보고 요구 또는 그 직원의 출입 검사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 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 련된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지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 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 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인정 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 다.

## 제27조 (적용제외 등)

① 「전기사업법」(소화 39<1964>년 법률 제170호)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전기 공작물, 「가스사업법」(소화 29<1954>년 법률 제51호) 제 2조제13항에 따른 가스공작물 또는 「광산보안법」(소화 24<1949>년 법률 제70호) 제 13조제1항의 경제산업성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매연발생시설, 특정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일반분진 발생시설, 특 정분진 발생시설 또는 수은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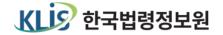
煙発生施設等」という。)にお いて発生し、又は飛散するばい 煙、特定物質、揮発性有機化合 物、一般粉じん、特定粉じん又 は水銀等(以下「ばい煙等」と いう。)を排出し、又は飛散さ せる者については、第六条から 第十条まで(同条第二項にあつ ては、第十七条の十三第一項、 第十八条の十三第一項及び第十 八条の三十一第一項において準 用する場合を含む。)、第十一 条及び第十二条(これらの規定 を第十七条の十三第二項、第十 八条の十三第二項及び第十八条 の三十一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 る場合を含む。)、第十七条第 二項及び第三項、第十七条の五 から第十七条の九まで、第十八 条、第十八条の二、第十八条の 六から第十八条の九まで並びに 第十八条の二十三から第十八条 の二十七までの規定を適用せ ず、電気事業法、ガス事業法又 は鉱山保安法の相当規定の定め るところによる。

2 前項に規定する法律に基づく 権限を有する国の行政機関の長 (以下この条において単に「行 政機関の長」という。)は、第

시설(이하 "매연발생시설 등"이 라 한다)에서 발생 또는 흩날리 는 매연, 특정물질, 휘발성유기 화합물, 일반분진, 특정분진 또 는 수은 등(이하 "매연 등"이라 한다)을 배출 또는 흩날리는 자 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 는 제17조의13제1항, 제18조의 13제1항 및 제18조의31제1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1조 및 제12조(이들 규정을 제17조의13제2항, 제18 조의13제2항 및 제18조의31제 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9까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6 부터 제18조의9까지 및 제18조 의23부터 제18조의27까지를 적 용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 법, 「가스사업법」 또는 「광산보안법」의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에 따른 권한을 가지는 국가 행정기관의 장 이하 이 조에서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6조,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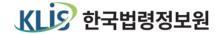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六条、第八条、第十一条若しく は第十二条第三項(これらの規 定を第十七条の十三第二項、第 十八条の十三第二項及び第十八 条の三十一第二項において準用 する場合を含む。)、第十七条 の五、第十七条の七、第十八 条、第十八条の六、第十八条の 二十三又は第十八条の二十五の 規定に相当する電気事業法、ガ ス事業法又は鉱山保安法の規定 による前項に規定するばい煙発 生施設等に係る許可若しくは認 可の申請又は届出があつたとき は、その許可若しくは認可の申 請又は届出に係る事項のうちこ れらの規定による届出事項に該 当する事項を当該ばい煙発生施 設等の所在地を管轄する都道府 県知事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3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に規 定するばい煙発生施設等におい て発生し、又は飛散するばい煙 等に起因する大気の汚染により 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係る被 害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行政機関の長に対 し、第九条、第九条の二、第十 七条の八、第十八条の八又は第 十八条の二十六の規定に相当す

제11조나 제12조제3항(이들 규 정을 제17조의13제2항, 제18조 의13제2항 및 제18조의31제2 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 제17조의5, 제17조의7, 제 18조, 제18조의6, 제18조의23 또는 제18조의25에 해당하는 「전기사업법」, 「가스사업 법, 또는 「광산보안법」 규정 에 따른 제1항에서 정하는 매 연발생시설 등과 관련된 허가나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나 인가의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 중 이 들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 당하는 사항을 해당 매연발생시 설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 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한다.

③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연발생시설 등에서 발생 또는 흩날리는 매연 등이 원인인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의장에게 제9조, 제9조의2, 제17조의8, 제18조의8 또는 18조의26에 해당하는 「전기사업





る電気事業法、ガス事業法又は 鉱山保安法の規定による措置を 執るべきことを要請することが できる。

4 行政機関の長は、前項の規定 による要請があつた場合におい て講じた措置を当該都道府県知 事に通知するものとする。

5 都道府県知事は、第一項に規 定するばい煙発生施設等につい て、第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 三項、第十七条の十一、第十八条の四若しくは第十八条の円 系の四若しくは第十八条の人 の二十九第一項の規定による命令又は第十八条 の二十九第一項の規定による 告若しくは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 は、あらかじめ、行政機関の に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二十八条 (資料の提出の要求等)

環境大臣は、この法律の目的を 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と認め るとき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 長に対し、必要な資料の提出及 び説明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2 都道府県知事は、この法律の 目的を達成するため必要がある と認めるときは、関係行政機関 법」,「가스사업법」 또는 「광산보안법」 규정에 따른 조 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취한 조치를 해당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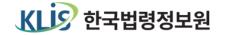
⑤ 도도부현 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연발생시설 등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이나 제3항, 제17 조의11, 제18조의4나 제18조의 11에 따른 명령 또는 제18조의 29제1항에 따른 권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 제28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환경대신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 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지사는 이 법의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





の長又は関係地方公共団体の長に対し、ばい煙発生施設、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一般粉にん発生施設、特定粉にん発生施設、特定粉にん発生施設、特定粉にん排出等作業若しくは水銀排出施設の状況等にしくは水銀排出施設の他の協力を求め、又はばい煙、揮発性有機化合物、粉にん若しくは水銀等による大気の汚染の防止に関し意見を述べることができる。

## **第二十八条の二** (環境大臣の指示)

環境大臣は、大気の汚染により 人の健康に係る被害が生ずることを防止するため緊急の必要が あると認めるときは、都道府県 知事又は第三十一条第一項の政 令で定める市(特別区を含む。)の長に対し、次に掲げる 事務に関し必要な指示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第九条、第九条の 二、第十四条第一項及び第三 項、第十五条第二項、第十五 条の二第二項、第十七条第三 項、第十七条の八、第十七条 の十一、第十八条の四、第十 八条の八、第十八条の十一、 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공공단체의 장에게 매연발생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일반분진 발생시설, 특정분진 발생시설, 특정분진 발생시설, 특정분진 배출 등 작업이나 수은배출시설의 상황 등에관한 자료의 송부, 그 밖의 협력을 요구하거나 또는 매연,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진이나 수은등에 따른 대기 오염 방지에 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제28조의2 (환경대신의 지시)

환경대신은 대기 오염으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도부현 지사 또는 제31조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특별구를 포함한다)의장에게 다음의 사무에 관하여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 항, 제15조의2제2항, 제17조 의제3항, 제17조의8, 제17조 의11, 제18조의4, 제18조의8, 제 조의11, 제18조의16, 제 18조의19, 제18조의26, 제18





第十八条の十六、第十八条の十九、第十八条の二十九、第十八条の二十九第二項並びに第二十三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関する事務

- 二 第十五条第一項、第十五条 の二第一項及び第十八条の二 十九第一項の規定による勧告 に関する事務
- 三 第二十一条第一項、第二十 三条第二項及び第二十七条第 三項の規定による要請に関す る事務

四 第二十一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意見を述べることに関する事務

五 第二十三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周知及び協力を求めることに関する事務 六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協力を求め、又は意見を述べることに関する事務

## 第二十九条 (国の援助)

国は、工場若しくは事業場における事業活動又は建築物等の解体等に伴うばい煙、揮発性有機化合物、特定粉じん又は水銀等の排出等による大気の汚染の防止のための施設の設置又は改善

조의29제2항 및 제23조제2항 에 따른 명령에 관한 사무

- 2.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9제1항에따른 권고에 관한 사무
- 3.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요청에 관한 사무
- 4. 제21조제3항에 따른 의견 진술에 관한 사무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지 및 협력 요구에 관한 사무
- 6.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력 요구 또는 의견 진술에 관한 사무

## 제29조 (국가의 원조)

국가는 공장이나 사업장의 사업 활동 또는 건축물 등의 해체 등 에 따른 매연, 휘발성유기화합 물, 특정분진 또는 수은 등의 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설치 또





につき必要な資金のあつせん、 技術的な助言その他の援助に努 めるものとする。

## 第三十条 (研究の推進等)

国は、ばい煙、特定物質、揮発性有機化合物、水銀等及び自動車排出ガスの処理に関する技術の研究、大気の汚染の人の健康又は生活環境に及ぼす影響の研究その他大気の汚染の防止に関する研究及び国際協力を推進し、その成果の普及に努めるものとする。

## 第三十条の二 (経過措置)

この法律の規定に基づき命令を制定し、又は改廃する場合においては、その命令で、その制定又は改廃に伴い合理的に必要と判断される範囲内において、所要の経過措置(罰則に関する経過措置を含む。)を定めることができる。

## 第三十条の三 (権限の委任)

この法律に規定する環境大臣の 権限は、環境省令で定めるとこ ろにより、地方環境事務所長に 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는 개선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 의 알선, 기술적 조언, 그 밖의 원조를 위하여 노력한다.

## 제30조 (연구의 추진 등)

국가는 매연, 특정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수은 등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대기 오염이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그 밖에 대기 오염 방지에 관한 연구 및 국제협력 을 추진하고 그 성과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한다.

## 제30조의2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명령을 제정 또는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으로 그 제정 또는 개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과조치(벌칙에 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다)를 정할 수 있다.

## 제30조의3 (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환경대신의 권한은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第三十一条 (政令で定める市の 長による事務の処理)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都道府県知事の権限に属する事務の一部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政令で定める市(特別区を含む。以下同じ。)の長が行うととすることができる。2 前項の政令で定める市のとなり、この法律の施行に必要な事項で定めるものはない。

## 第三十一条の二 (事務の区分)

제31조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에 의한 사무의 처리)

① 이 법에 따라 도도부현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시(특별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집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시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성령으로 정하는 것을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 (사무의 구분)

이 법에 따라 도도부현이 처리하게 되어 있는 사무 중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처리하도록되어 있는 것(지정매연총량삭감계획의 작성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15조제3항, 제15조의2제3항 및 4항, 제22조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것은「지방자치법」(소화2<1947>년 법률 제67호)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제1호법정수탁사무로 한다.





- 二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
- 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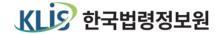
## 第三十二条 (条例との関係)

この法律の規定は、地方公共団 体が、ばい煙発生施設につい て、そのばい煙発生施設におい て発生するばい煙以外の物質の 大気中への排出に関し、ばい煙 発生施設以外のばい煙を発生 し、及び排出する施設につい て、その施設において発生する ばい煙の大気中への排出に関 し、揮発性有機化合物排出施設<br/> について、その揮発性有機化合 物排出施設に係る揮発性有機化 合物以外の物質の大気中への排 出に関し、揮発性有機化合物排 出施設以外の揮発性有機化合物 を排出する施設について、その 施設に係る揮発性有機化合物の 大気中への排出に関し、一般粉 じん発生施設以外の一般粉じん を発生し、及び排出し、又は飛 散させる施設について、その施 設において発生し、又は飛散す る一般粉じんの大気中への排出 又は飛散に関し、特定粉じん発 生施設について、その特定粉じ ん発生施設において発生し、又

## 제32조 (조례와의 관계)

이 법은 지방공공단체가 매연발 생시설에 대하여 그 매연발생시 설에서 발생하는 매연 외 물질 의 대기 배출에 관하여, 매연발 생시설 외의 매연을 발생 및 배 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에서 발생하는 매연의 대기 배 출에 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그 휘발성유 기화합물배출시설과 관련된 휘 발성유기화합물 외 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하여, 휘발성유기화합 물 배출시설 외의 휘발성유기화 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과 관련된 휘발성유기화 합물의 대기 배출에 관하여, 일 반분진 발생시설 외의 일반분진 을 발생 및 배출하거나 흩날리 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에서 발생 또는 흩날리는 일반분진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에 관하여, 특정분진 발생시설에 대하여 그 특정분진 발생시설에서 발생 또 는 흩날리는 특정분진 외 물질 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에 관하 여, 특정분진 발생시설 외의 특





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以外の物 質の大気中への排出又は飛散に 関し、特定粉じん発生施設以外 の特定粉じんを発生し、及び排 出し、又は飛散させる施設につ いて、その施設において発生 し、又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の 大気中への排出又は飛散に関 し、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につ いて、その作業に伴い発生し、 又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以外の 物質の大気中への排出又は飛散 に関し、特定粉じん排出等作業 以外の建築物等を解体し、改造 し、又は補修する作業につい て、その作業に伴い発生し、又 は飛散する特定粉じんの大気中 への排出又は飛散に関し、水銀 排出施設について、その水銀排 出施設に係る水銀等以外の物質 の大気中への排出に関し、並び に水銀排出施設以外の水銀等を 大気中に排出する施設につい て、その施設に係る水銀等の大 気中への排出に関し、条例で必 要な規制を定めることを妨げる ものではない。

정분진을 발생 및 배출 또는 흩 날리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에서 발생 또는 흩날리는 특정 분진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에 관하여,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 에 대하여 그 작업 시 발생 또 는 흩날리는 특정분진 외 물질 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에 관하 여, 특정분진배출 등 작업 외의 건축물 등을 해체·개조 또는 보 수하는 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 시 발생 또는 흩날리는 특정분 진의 대기 배출 또는 비산에 관 하여, 수은배출시설에 대하여 그 수은배출시설과 관련된 수은 등 외 물질의 대기 배출에 관하 여, 수은배출시설 외의 수은 등 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시설 에 대하여 그 시설과 관련된 수 은 등의 대기 배출에 관하여 조 례로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것 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第六章 罰則

## 第三十三条

第九条、第九条の二、第十四条 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第十七 条の八、第十七条の十一、第十 八条の八、第十八条の十一、第 十八条の二十六又は第十八条の 二十九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 に違反した者は、一年以下の懲 役又は百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 る。

## 第三十三条の二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者は、六月以下の懲役又は五十 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 第十三条第一項又は第十三 条の二第一項の規定に違反し た者
- 二 第十七条第三項、第十八条 の四、第十八条の十六、第十 八条の十九又は第二十三条第 二項の規定による命令に違反 した者
- 2 過失により、前項第一号の罪 を犯した者は、三月以下の禁錮 こ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 する。

## 제6장 벌칙

#### 제33조

제9조, 제9조의2, 제14조제1항이나 제3항, 제17조의8, 제17조의11, 제18조의8, 제18조의11, 제18조의26 또는 제18조의29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3조의2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 의2제1항에 위반한 자
  - 2. 제17조제3항, 제18조의4, 제18조의16, 제18조의19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 ② 과실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第三十四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者は、三月以下の懲役又は三十 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 一第六条第一項、第八条第一項、第十七条の五第一項、第十七条の七第一項、第十八条の六第一項若しくは第三項、第十八条の十五第一項、第十八条の二十三第一項又は第十八条の二十五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 二 第十五条第二項又は第十五 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命 令に違反した者

## 第三十五条

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 者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 する。

一 第七条第一項、第十七条の 六第一項、第十八条第一項若 しくは第三項、第十八条の二 第一項、第十八条の七第一項 又は第十八条の二十四第一項 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 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

#### 제3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7조의5제1항, 제17조의7 제1항, 제18조의6제1항이나 제3항, 제18조의15제1항, 제18조의23제1항 또는 제18조의25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2. 제15조제2항 또는 제15조 의2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 한 자

## 제3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제17조의6제1항, 제18조제1항이나 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7제1항 또는 제18조의24제1항에 따른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二 第十条第一項、第十七条の 九、第十八条の九又は第十八 条の二十七の規定に違反した 者

三 第十六条又は第十八条の三 十の規定に違反して、記録を せず、虚偽の記録をし、又は 記録を保存しなかつた者 四 第二十六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報告をせず、若しくは虚 偽の報告をし、又は同項の規 定による検査を拒み、妨げ、 若しくは忌避した者

## 第三十六条

法人の代表者又は法人若しくは 人の代理人、使用人その他の従 業者が、その法人又は人の業務 に関し、第三十三条から前条ま での違反行為をしたときは、行 為者を罰するほか、その法人又 は人に対して各本条の罰金刑を 科する。

## 第三十七条

第十一条若しくは第十二条第三 項(これらの規定を第十七条の 十三第二項、第十八条の十三第 二項及び第十八条の三十一第二 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

- 2. 제10조제 항, 제17조의9,제18조의9 또는 제18조의27에 위반한 자
- 3. 제16조 또는 제18조의30 에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36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사람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 의 종업자가 그 법인 또는 사람 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등 그 법인 또는 사람에게 각 조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 제37조

제11조나 제12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17조의13제2항, 제18조의13제2항 및 제18조의3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제18조의15제2항에





む。)又は第十八条の十五第二 項の規定による届出をせず、又 は虚偽の届出をした者は、十万 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자는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附 則

부칙